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8일

정남면장 인  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 *흥	장 *흥 1977-02-15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4-15